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이전·신축 업무협약 동의안

| | |
|----------|-----|
| 의안 번호 | 916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88서울올림픽 개최지인 잠실종합운동장을 스포츠·문화 여가가 어우러지는 세계적 규모의 스포츠·MICE 복합단지로 재탄생시키고자
- 나. 현대차GBC 공공기여를 활용한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과 잠실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 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부지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의 이전이 불가피하여, 공공기여를 재원으로 학생체육관 이전·신축 후 기존 학생체육관을 철거할 예정임
- 라. 이에 관한 「서울시-서울시교육청」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하여 업무협약 체결 전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약개요

- 협 약 명 :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이전·신축에 관한 업무협약
- 협약당사자 :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 목 적 : 잠실종합운동장 내의 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이전 및 신축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 `15.4~`16.5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체육관 이전 협의
 - (최종) 운동장 내 이전, 개발 방향 향후 협의
- `17.10~`18.12 학생체육관 이전·신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 이전 위치(최종:주경기장 서남측), 교육청 요구 프로그램 반영 및 공백 최소화 추후 협력 등
- `20.3 ~ `22.8 학생체육관 이전신축을 위한 행정협의체 진행 (7회)
 - 건축계획(안), 공유재산 이관방안 합의, 협약서(안)확정을 위한 협의 등
- `23.3 ~`23.4 협약(안) 확정을 위한 협의 진행(공문 시행)
- `23.4 협약(안) 법률자문(협약서 검토) 완료(법률지원담당관)

다. 주요 협약내용

- (제1~3조) 목적, 용어정의
- (제4조) 사업 추진방안
 - 1단계로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학생체육관 (수영장) 신축건립사업을 추진한다(착공 후 42개월)
 - 2단계로 잠실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 사업 추진
 -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과 잠실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 학생체육관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조
- (제5조) 업무역할
 - 서울시 : 학생체육관 설계 및 감리, 설계/감리 용역 및 인허가 업무 일체, 토지 및 건물 등 공유재산 관리 및 이관 업무 일체
 - 교육청 : 사업진행 관련 업무협조, 학생체육관 운영 및 유지관리, 공유재산 이관 및 사용 협조, 기존 학생체육관 용도폐지 등
- (제6조) 시설개요
 - 대지면적 : 11,389 m^2 (현재 학생체육관과 동일 면적으로 이전신축)
 - 건축규모 : 지하4층/지상2층, 연면적 : 25,151 m^2
 - 주요시설 : 실내체육관, 수영장(다이빙장포함), 시청각실 및 다목적실 등

- (제7조) 시설의 소유권 및 하자관리
- (제8조) 통합수영장 및 보조경기장 운영방안
 - 공인1급 최초 및 재공인 등 인증에 필요한 경비는 서울시 부담한다
 - 학생체육관 내 수영장과 민간투자사업 내 수영장은 각 기관별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통합수영장 사용이 필수적인 행사 시 주관기관에서 전용하여 사용한다.(학생체육관 경영장을 월업풀로, 민간투자사업 경영장을 메인풀로 활용)
 - 통합수영장 및 보조경기장의 사용을 위해선 별도 세부협약(안) 마련한다
- (제9조) 공용공간의 관리 및 사용
- (제10조) 공유재산 이관
 - (토지) 공유재산 이관에 관한 별도 협약체결 이후 現 학생체육관 부지(잠실동 10-3번지)와 학생체육관 신축 부지(신규지번 부여 예정)를 동일면적으로 이관한다.
 - (건물) 공공기여 사업자는 학생체육관 신축건물을 준공검사와 동시에 서울시 교육청으로 기부채납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학생체육관 건물을 신축 학생체육관 준공일정에 맞추어 관련 절차에 따라 용도폐지한다
- (제11조) ~ (제13조) 협약의 변경, 협약종료, 효력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조치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첨부자료 : 학생체육관 이전·신축 업무협약서(안)

※ 작성자: 동남권추진단 공공사업팀 김민서(☎ 2133-8250)

-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간 -

학생체육관 이전·신축에 관한 업무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이라 한다)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의 이전·신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이 잠실 종합운동장 부지 내 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이하 ‘학생체육관’이라 한다)의 이전 및 신축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범위) 양 기관의 협약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의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 투자사업 시행에 따른 학생체육관의 이전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공공기여 이행 협약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되는 학생체육관의 신축에 관한 사항

제3조(용어설명)

1. 국제교류복합지구 :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166만 m^2 면적으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 공공기여 :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 이행협약에 따라 민간 개발사업자 부담으로 기반시설(공공시설 등) 설치를 제공 받는 것
3. 공공기여 사업자 :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에 따라 서울시와 공공기여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기반시설(공공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한 민간 개발사업자

4.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 : 잠실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및 마스터 플랜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중 공공기여로 추진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5. 잠실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행되는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6. 통합수영장 : 학생체육관 내의 수영장과 이와 연계하여 조성되는 잠실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복합체육시설 내 수영장을 통칭하여 일컬음
7. 공용공간 : 학생체육관 내 보행 및 차량이동을 위하여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구간과 공동으로 이용되는 통로, 주차장, 옥외공간 등과 같은 공간

제4조(대상지 및 사업추진방안)

- ① 본 협약의 대상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잠실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458,806㎡) 중 공공기여 협약에 따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구역(158,657㎡)으로 하며,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협력한다.
 1. 양 기관은 서울시가 수립한 「잠실학생체육관 이전신축 기본계획 수립(‘18.12월)」의 내용을 유지·존중한다.
 2. 1단계로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의 사업 일정에 따라 학생체육관의 신축 건립사업(착공 후 42개월(26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을 추진한다.
 - ※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및 잠실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일정에 따라 학생체육관의 착공 및 준공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3. 2단계로 잠실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다.
- ② 양 기관은 제1항의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과 잠실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과정 중에 학생체육관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에 협조한다.
 1. 서울시교육청은 잠실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 학생체육관 부지(잠실동 10-3번지) 제공 및 이전에 협조한다.

2. 서울시는 신축 학생체육관 건립사업의 준공검사를 완료한 이후에 기존 학생체육관이 멸실되도록 협조한다.

※ 기존 학생체육관은 잠실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멸실한다.

제5조(업무역할) 양 기관은 학생체육관 이전·신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1. 서울시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학생체육관 신축 설계 및 감리

나. 학생체육관의 공공기여 관리

다. 도시계획변경, 설계 및 감리용역, 제영향평가 및 인허가 업무 일체

※ 공사는 공공기여 사업자가 시행하며, 공사 과정에서 주요사항 변경 발생 시 사전에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한다.

라. 토지 및 건물 등 공유재산 관리 및 이관 업무 일체

2.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학생체육관 이전·신축 사업 진행에 따른 업무협조

나. 학생체육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일체

다. 공유재산의 원활한 이관 및 사용을 위한 업무협조

제6조(시설개요) 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신축 설계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대지면적 : 11,389㎡ (現 잠실동 10-3번지와 동일한 면적으로 이전)

※ 이전 위치는 주경기장 남서측으로 하며, 필지 분할 후 신규 지번 배정 예정

② 건축규모 : 지하4층/지상2층, 연면적 25,151.49㎡

※ 건축허가 기준 면적이며 공공기여 확정 이후 공사금액이 증가되는 설계변경 불가

③ 주요시설

1. 실내체육관

2. 경영장(50m×10레인×2m), 다이빙장(25m×25m×5m) 및 수영 부대시설

※ 공인3급 인증이 가능하도록 기구 및 부대시설 계획수립

3. 시청각실
4. 업무시설 및 다목적실
5. 전용 주차장
6. 전기실, 기계실 등 학생체육관의 독립적 사용이 가능한 각종 서비스실

제7조(시설의 소유권 귀속 및 하자관리)

- ① 학생체육관 공사가 완료되면 양 기관이 합동으로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준공검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학생체육관은 서울시교육청에 기부채납된다.
- ② 학생체육관의 준공과 동시에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관련 서류를 서울시교육청(유지관리부서)에 인계하고 서울시는 공공기여 사업자 및 서울시교육청과 미리 협의하는 등 인수인계 절차에 협조한다.
- ③ 학생체육관 인수인계 완료 이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이 공공기여 사업자에게 보수 등을 요청한다.

제8조(통합수영장 및 보조경기장의 운영)

- ① 통합수영장의 공인 1급 최초 공인 및 재공인 등 인증에 필요한 경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한다.
- ② 학생체육관 내 수영장과 잠실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복합체육시설 내 수영장은 각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통합수영장 사용이 필수적인 행사 시에는 행사 주관기관에서 전용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공인1급 행사 시, 학생체육관 경영장을 워업풀로 사용하며 잠실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복합체육시설 내 수영장(경영장 및 다이빙장)에서 경기를 진행한다.
 2. 서울시 주관 행사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하며, 서울시교육청 주관 행사는 서울시에서 지원한다.

- ③ 공인1급 수영대회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간 통합수영장의 세부 운영협약을 마련하도록 한다.
- ④ 서울시는 학생체육관 부지 상부에 구축하는 보조경기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보조경기장의 체육시설(트랙, 관람석, 조명탑 등)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운영안을 마련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다.

제9조(공용공간의 관리 및 사용)

- ①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 구간의 모든 공용공간에 대한 관리는 서울시에서 담당한다. (단, 학생체육관 부지 내 전용공간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리한다.)
- ② 학생체육관의 이용을 위한 보행자 및 차량이 제1항의 공용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소형차량은 학생체육관 구역 내 독립적으로 주차할 수 있으며, 버스 등 대형차량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
- ④ 양 기관은 주차시스템 및 주차정산 등에 관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별도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 잠실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지하주차장의 통합연결 및 주차시스템 방안은 추후 민자사업자와 협의과정 필요

제10조(공유재산의 이관)

- ① 서울시의 일반회계 재산과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재산을 상호 이관한다.

1. 토지는 아래와 같이 이관한다.

서울시는 제2항의 공유재산 이관에 관한 별도협약 체결 이후 학생체육관의 신축 부지(신규 지번 부여 예정)를 現 잠실동 10-3번지(11,389㎡)와 동일 면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교환한다.

2. 건물은 아래와 같이 이관한다.

가. 공공기여 사업자는 신축 학생체육관 건물을 본 협약 제7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에 기부채납한다.

나.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학생체육관 건물을 신축 학생체육관 준공 일정에 맞추어 관련 절차에 따라 용도폐지한다.

※ 서울시는 용도폐지된 학생체육관 건물을 멸실하도록 협조한다.

② 공유재산 이관에 관하여는 별도 세부협약을 향후 합의하여 마련하도록 한다.

제11조(협약의 변경) 본 협약 체결 후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 당사자간 상호 합의를 통해 서면으로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의 종료)

- ① 본 협약은 학생체육관의 준공(검사) 및 공유재산 이관 절차가 완료되면 그 효력이 종료된다.
- ② 양 기관은 본 협약 종료 이후에도 보조경기장 세부운영 및 통합수영장의 유지관리에 대한 별도협약을 체결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한다.

제13조(효력) 본 업무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협약 당사자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간
학생체육관 이전·신축에 관한 업무협약서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8조(통합수영장 및 보조경기장의 운영)제1항 통합수영장의 공인1급 최초 공인 및 재공인 등 인증에 필요한 경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동의안에 제시된 공인 1급 수영장의 공인 비용은 최초 공인 시 30,000천원, 재공인 시 15,000천원, 공인기간은 3년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붙임: 대한수영연맹 공인규정(2021.01.21.) 공인료 기준표

4. 작성자

서울특별시 동남권추진단 공공사업팀 김민서(☎ 2133-8250)

[별표 제1호]

공인료 기준표

| 공인품목 | 세부내역 | 공인료 (단위: 천원) | 비 고 (공인기간) |
|------|--------------------------------------|-----------------|---------------|
| 수영장 | 특급수영장 신 규 | 50,000 | 3년 |
| | 특급수영장 재공인 | 25,000 | |
| | 1급 수영장 신 규 | 30,000 | |
| | 1급 수영장 재공인 | 15,000 | |
| | 2급 수영장 신 규 | 15,000 | |
| | 2급 수영장 재공인 | 10,000 | |
| | 3급 수영장 신 규 | 6,000 | |
| | 3급 수영장 재공인 | 3,000 | |
| 부대시설 | 전광판 및 계측장비(부정출발 감지 상판(일체형포함),전산장비 등) | 30,000 | 2년 |
| | 정수 및 살균장치 | 30,000 | |
| | 타 일 | 7,500 | |
| | 수 조 | 7,500 | |
| 경기용품 | 경영 스타팅블록 | 5,000 | 2년 |
| | 트랙형 받침대 개별형 | 700 | |
| | 트랙형 받침대 일체형 | 700 | |
| | 경영 코스로프 | 700 | |
| | 배영렛지 | 700 | |
| | 수구골대 | 300 | |
| | 30초계 | 300 | |
| | 8분계 | 300 | |
| | 수구 코스로프 | 300 | |
| | 스프링보드 | 4,000 | |
| | 몸 체 | 2,000 | |